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1일, 전용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용기의원)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중대 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 규정

○ 개인정보 유출 등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므로,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고의 또는 과실(중대한 과실

등)’ 명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②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이용자 피해 사유’의 경우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③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구별되어 규제가 필요한지와 개인정보 유출 등 외의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반 사항¹⁾의 귀책사유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동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귀책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검토 필요,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의 귀책사유 포함과 개인정보 유출, 분실, 변조 또는 오용, 중대한 장애 또는 반복적 장애 등에 대한 기준 명확화 필요, ③ ‘요금 과다 청구’, ‘부당 청구 정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 기준 필요, ④ 위약금 외에 서비스 이용 요금 등 정상적인 사항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기준 명확화 필요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이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이 규정하는 귀책사유는 별도의 규율체계와 제재수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업자 귀책사유 간주 조항이 의미가 광범
위하고 불명확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